

의안번호	제 389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9월 일 (제 314 회)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정지숙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8월 31일

**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(정지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8월 31일  
발 의 자 : 정지숙, 김희수, 심기보,  
김봉희, 김형근, 임 현,  
김영주

**1. 개정이유**

- 충북도립예술단에서 충북도립교향악단으로의 변경에 따른 교향악단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정원의 변경(안제3조제3항)
-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정원 변경
  - 42명 이내 → 45명 이내

**3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라. 기 타
- (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  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교향악단의 구성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42명 이내로 구성하며”를 “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~ ② 생략            ③ <u>교향악단의 구성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42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2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<u>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부칙        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지방자치법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